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26 선고 2022가단458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

2. D

변 론 종 결 2023. 4. 12.

판 결 선 고 2023. 4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986,301원 및 그 중 2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2. 1. 20.부터 2022. 6. 24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2021. 6. 14.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주식회사, 보험가입금액 2억 원, 보험기간 2021. 6. 1.부터 2022. 5. 31.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 체결하는 물품공급계약상 외상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피고 D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,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1. 12. 20. 피보험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,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는 연 9%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0,000,000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2. 1. 19.까지의 지연이자 986,301원의 합계 200,986,301원 및 그 중 200,000,000원에 대하여 2022. 1. 20.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. 6. 24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유리